

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9. 1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8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8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8. 9. 1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종 철

가. 개정이유

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마포구청의 위치가 성산동 275-3번지에서 성산동 370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 내용

1)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
2) “성산동 275-3번지”를 “난지도길 30(성산동 370)”으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2008년 11월 1일부터 마포구청 청사의 위치를 성산동 275번지3호에서 새주소인 난지도길 30(성산동 370)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

자치단체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